

# 평가보상위원회 규정

제정 2007. 3. 1

## 제1조 (목적 등)

- ① 이 규정은 (주)안랩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평가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1. “경영진”이란 집행임원 또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  2. “주요경영진”이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이사를 말한다.

## 제2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기 만료시점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제3조 (회의소집)

- ① 위원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, 일시,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보,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(컴퓨터통신, 전자우편 등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 제4조 (기능)

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요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수립
2. 자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수립
3.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 연계한 성과보상체계 수립
4. 주요 경영진 및 사외이사 후보군 자격기준 수립

## 제5조 (결의사항 및 심의사항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  1. 경영진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관한 사항

2. 자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관한 사항
3. 주요 경영진 및 사외이사 후보군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경영진의 연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
2. 자회사 경영진의 연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
3. 기타 성과보상체제와 관련되어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6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다.

③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7조 (통지의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를 제외한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## 제8조 (관계자의 출석)

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9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진행경과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## 제10조 (간사)

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 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.

## 제11조 (외부자원의 활용)

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준용규정)**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, 「정관」, 「이사회규정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

**부 칙(2007. 3. 1)**

이 규정은 2007. 3. 1 부터 시행한다